

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 보험료 지원 안내

Q. 국가에서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상담 및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① 지원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 기준 해당자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② 지원제외 대상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
-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28,951,116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위의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부터 소급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원수준(2019년 현재) :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고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현금지원 아님)

- 본인의 신고소득이 97만원 이하 : 월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 본인의 신고소득이 97만원 초과 : 월 43,650원 정액 지원

(예시) 소득을 97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87,3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인분은 43,65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3,650원을 지원하여 87,3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음

④ 지원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시장·구청장·읍장·면장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신청 가능

출처 : NPS국민연금공단

※ 본란은 독자분들께 사양, 유통, 질병,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ch-spirow@hanmail.net(장성영 기자), wg1167@hanmail.net(임설희 기자)